

보도 일시	2022. 6. 29.(수) 12:00 2022. 6. 30.(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6. 29.(수) 12:00
담당 부서 <총괄>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책임자	과 장 이원주 (044-202-7368)
		담당자	사무관 최미영 (044-202-7349)

실업급여 ·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2.7.1~7.31.) 운영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 *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
-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 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제보 978건이 접수되어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중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포상을 신청한 267명에게 포상금 3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 '19년 1,936건 → '20년 2,862건 → '21년 3,112건

□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그간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 한다.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제보,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라며

○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책임자	과 장 이원주 (044-202-7368)
		담당자	사무관 최미영 (044-202-7349)
<공동>	코로나19고용회복지원단 코로나19고용회복지원반	책임자	반 장 박병기 (044-202-7368)
		담당자	사무관 황호엽 (044-202-7292)
<공동>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수경 (044-202-7470)
		담당자	서기관 윤종호 (044-202-7477)
<공동>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책임자	과 장 홍정우 (044-202-7307)
		담당자	사무관 이원준 (044-202-73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업급여>

- ❖ 'ㄱ'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A'사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 ❖ 'ㄴ' 수급자의 'B'사에서의 실제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피보험자격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 ❖ 'ㄷ' 수급자는 'C'사에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C'사 대표와 공모하여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위장퇴사**)
- ❖ 'ㄹ' 수급자는 'D'사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하였다고 'D'사 대표와 공모하여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위장고용**)

<고용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

- ❖ 'ㄱ' 회사는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기간 중 근로자 출근 명령 후 고용장려금을 수령
- ❖ 'ㄴ' 회사는 휴업수당 과다 지급 후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으로 반환(페이백)
- ❖ 'ㄷ' 회사는 근무사실이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고용장려금을 수령
- ❖ 'ㄹ' 회사는 정규직 채용하여 장려금을 지급 받은 후 해당 근로자를 계약만으로 피보험자 상실신고
- ❖ 'ㅁ' 회사는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채용하여 지원금 수령
- ❖ 'ㅂ' 회사는 이미 근로를 제공(사전근로)하고 있던 자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 후 장려금 수령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 ❖ 'ㄱ' 수급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A'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숨기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 ❖ 'ㄴ' 수급자는 'B'사에서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B'사 대표와 공모하여 육아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 ❖ 'ㄷ' 수급자는 'C'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C'사 대표와 공모하여 현재 근무 중이며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라고 허위신고 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직업능력개발사업>

- ❖ 'ㄱ'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계좌 발급받아 훈련장려금 부정수급
- ❖ 'A' 사업주(혹은 훈련기관)은 훈련비용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 실제 훈련 미 실시 훈련생을 허위 등록하여 훈련비 부정수급
- ❖ 'B' 사업주(혹은 훈련기관)은 인정이 불가능한 훈련과정을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과정 인정받아 훈련비 부정수급
- ❖ 'C' 사업주(혹은 훈련기관)은 출석률을 조작하여 수료 기준 미달자를 수료한 것처럼 허위 보고 후 훈련비 부정수급

붙임 2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

□ 지급대상(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지급 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

□ 지급기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

사업 구분	포상기준	연간 상한액(1명당)	하한액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500만원 (사업주 공모 시 5,000만원)	1만원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	3,000만원	

□ 지급제한 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제2항)

포상금의 지급 제한
①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②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③ <u>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u> ④ <u>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u> ⑤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u>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u> ⑥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붙임 3

전국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담 창구

기관명	부서명	주소
서울청	부정수급조사과	서울 중구 을지로 50, 9층 (을지로2가, 을지한국빌딩)
서울강남지청	고용관리과	서울 강남구 도곡로408, 9층 (대치동, 디마크빌딩)
서울동부지청	고용관리과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동관 11층 (가락동, IT벤처타워)
서울서부지청	고용관리과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6층 (도화동, 태영대시앙빌딩)
서울남부지청	고용관리과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6층 (양평동1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9층 (상계동, 현대증권빌딩)
서울관악지청	고용관리과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2층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 3차)
중부청	부정수급조사과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4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3층 (계산동, 영산빌딩)
부천시청	지역협력과	경기 부천시 길주로 360, 3층 (중동, KD타워)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1층 (가능동, 신동아파라디움)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4층 404, 405호 (장항동, 남정씨티프라자 7차)
경기지청	고용관리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 5층 (인계동, 세아빌딩)
성남지청	고용관리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5층 (구미동, 성남고용노동지청)
안양지청	지역협력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6층 (안양동, 메세타워)
안산지청	고용관리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3층 (고잔동, 현대해상 안산사옥)
평택지청	지역협력과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2층 (이충동, 장당프라자)
강원지청	고용관리과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5층 (석사동, 춘천고용센터)
강릉지청	지역협력과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 1층 (교동, 강릉고용센터)
원주지청	지역협력과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2층 4번 창구 (개운동, 한신프라자)
태백지청	지역협력팀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5층 (남양동, 현진빌딩)
영월출장소	지역협력팀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층 (영월고용노동출장소)
부산청	부정수급조사과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4층 (양정동, 시청역롯데골드로즈)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3층 (금사동,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기관명	부서명	사무실주소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부산 북구 화명대로 9, 3층 (화명동, 코스모북부산빌딩)
창원지청	고용관리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9층 (상남동, 창원고용센터)
울산지청	고용관리과	울산 남구 화합로 138, 8층 (삼산동, 옥산빌딩)
양산지청	지역협력과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1층 (양산고용노동지청)
진주시청	지역협력과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8층 (장대동, 안성빌딩)
통영지청	지역협력과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4층 (통영고용센터)
대구청	부정수급조사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01, 3층 (범어3동, 삼성화재사옥)
대구서부지청	지역협력과	대구 서구 서대구로 9, 5층 (내당동, 대구서부고용센터)
포항지청	고용관리과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2층 (죽도동, 포항고용센터)
구미지청	지역협력과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7층 (송정동, 구미고용센터)
영주시청	지역협력팀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3층 (휴천동, 영주고용노동지청)
안동지청	지역협력팀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4층 (태화동, 안동고용노동지청)
광주청	부정수급조사과	광주 북구 금남로 121, 8층 (북동, 광주고용센터)
전주시청	고용관리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3층 (진북동, 전주고용센터)
익산지청	지역협력과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3층 (남중동, 익산고용센터)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3층 (조촌동, 군산고용센터)
목포지청	지역협력과	전남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2층 (상동, 목포고용노동지청)
여수지청	지역협력과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3층 (웅천동, 여수고용센터)
대전청	부정수급조사과	대전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2층 (탄방동, 계룡건설 본사사옥)
청주시청	고용관리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7층 (분평동, BYC빌딩)
천안지청	고용관리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163, 3층 (성정동, 충청타워)
보령지청	지역협력과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1층 (명천동, 보령고용센터)
충주시청	지역협력과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4층 (봉방동, 세일빌딩)
서산출장소	지역협력팀	충남 서산시 쌍연남1로 37, 4층 (잠흥동, 서산고용노동출장소)
제주도	제주고용센터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2층(이도일동, 제주고용센터)
제주도	서귀포고용센터	제주 서귀포시 동홍로 186, 4층 (동홍동, 서귀포고용센터)